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재난발생 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완화 기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한시적 완화기준의 적용(안 10조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. . ~ .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한시적 완화기준의 적용) 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

제1호에 따른 재난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에 처한 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필요한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적 완화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고를 하여야 한다. 한시적 완화기준 적용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제2항 전단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한시적 완화기준의 적용 개시일
2. 한시적 완화된 재산의 합계액기준(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시 중 재산의 합계액기준의 220%를 초과할 수 없다)
3. 그 밖에 한시적으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0조(한시적 완화기준의 적용)</u> <u>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에 처한 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필요한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적 완화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고를 하여야 한다. 한시적 완화기준 적용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u> <u>③ 제2항 전단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1. 한시적 완화기준의 적용 개시일</u> <u>2. 한시적 완화된 재산의 합계액기준(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시 중 재산의 합계액기준의 220%를 초과할 수 없다)</u>

	3. 그 밖에 한시적으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064